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2018년 11월 13일
-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18년 11월 20일
- 라. 상정일자: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위원회(2018. 12.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 2조)
-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규정함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지원범위 규정(안 제5조)

-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생활고충·법률·취업 상담 및 지원,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6, 7조)

-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지역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

○ 협의회 구성 등(안 제8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국장,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과장,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규정함

○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3조)

○ 지원단체 지원 및 사무의 위탁 규정(안 제14, 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광묵)

- 본 제정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항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조기정착 지원과 생활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지원의 범위와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에 따른 기능, 구성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비밀엄수를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탈북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임.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등을 통해 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37 호
----------	--------

제출연월일 : 2018.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 다.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생활고충·법률·취업 상담 및 지원,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 규정(안 제5조)
-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6조~제7조)
- 마. 지역협의회 구성 등 규정(안 제8조)
- 바. 지원단체 지원 및 사무의 위탁 사항 규정(안 제16조~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인권영향평가: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관련 조항 및 위원회 회의록 작성 관련 내용을 명시토록 권고하여 반영함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의 균형적인 참여를 위해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여 관련 규정을 반영함

라. 입법예고(2018. 10. 4. ~ 10. 24.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2. 생활고충,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남부하나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소관 팀장이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때
3.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엄수 의무)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제3조(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위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